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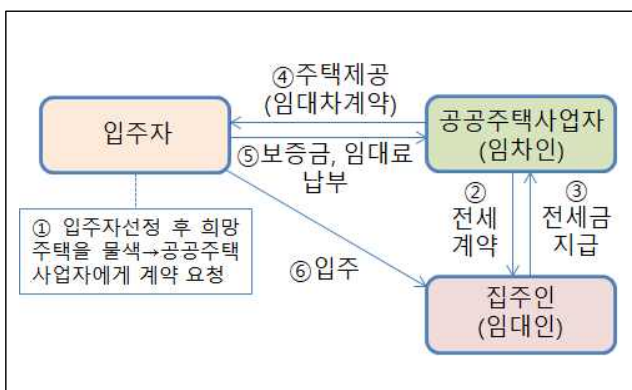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1. 1. 21.(목) / 총 9매(본문6, 참고3)	
담당부서 공공주택지원과	담당자	• 과장 정수호, 사무관 박인영, 주무관 김효은 • ☎ (044) 201-4479, 4535	
보 도 일 시		2021년 1월 2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1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신혼·청년·다자녀·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

-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...신혼·청년 상시모집
-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·온라인 접수 확대...입주자 편의 제고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신혼부부, 청년,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'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.
-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, 올해 공급물량은 총 4.1만호이다.

< 전세임대주택 지원구조 >



< '21년 유형별 공급물량 >

유형	공급물량 (41,000호)
신혼 I	9,000호
신혼 II	5,000호
청년	10,500호
다자녀	2,500호
일반·고령자	14,000호

-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,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·시행한다.

- 일반·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.1억 원(‘20년 0.9억), 광역시 0.8억 원(‘20년 0.7억)까지 상향하고, 신혼 I·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.35억 원(‘20년 1.2억), 광역시 1억 원(‘20년 0.95억)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.

<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>

구분	지원한도액			입주자 부담분	
	수도권	광역시	기타지역	보증금	월임대료(기금지원금 이자)
신혼 I	13,500만 원	10,000만 원	8,500만 원	지원금의 5%	○ 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(연 1~2%) - 4천만 원 이하 연 1% - 4천만 원~6천만 원 연 1.5% - 6천만 원 초과 연 2%
신혼 II	24,000만 원	16,000만 원	13,000만 원	지원금의 20%	
청년	12,000만 원	9,500만 원	8,500만 원	100~200만 원	
다자녀	13,500만 원	10,000만 원	8,500만 원	지원금의 2%	
일반·고령자	11,000만 원	8,000만 원	6,000만 원	지원금의 2~5%	

* 다자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한도 상향

- 청년,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.

□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※ 세부 입주자격, 모집일정은 첨부 참조(붙임1·2)

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: I 유형 9,000호, II 유형 5,000호

-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(예비)신혼부부,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,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된다.
- 신혼부부 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(맞벌이의 경우 90%) 이하*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.

* 3인 가구 기준 394만 원(‘20년), ** 총자산 288백만원, 자동차 2,468만원 이하(‘20년)

-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천 5백만 원, 광역시 1억 원,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,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%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(전세금의 95%)에 대한 금리(연 1~2%)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.
- **신혼부부Ⅱ 유형**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%(맞벌이의 경우 120%) 이하*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.

*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('20년), ** 총자산 288백만원, 자동차 2,468만원 이하('20년)
-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 원, 광역시 1억 6천만 원, 지방 1억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,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20%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(전세금의 80%)에 대한 금리(연 1~2%)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.
- 한편,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.5%p(1자녀 0.2%p, 2자녀 0.3%p, 3자녀 이상 0.5%p)까지 인하하여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.

② 청년 전세임대 : 10,500호

-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, 취업준비생(졸업 후 2년 이내)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,
-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,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*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**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.

*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('20년), ** 총자산 288백만원, 자동차 2,468만원 이하('20년)

-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.

*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

-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, 광역시 9천 5백만 원,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.

- 입주자는 ① 100만원(2순위 200만원)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(전세금-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)에 대한 금리(연 1~2%)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.

- 다만,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% 이하·장애인 등은 0.5%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,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.

③ 다자녀 전세임대 : 2,500호

-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,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*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**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.

* 4인 가구 기준 436만 원('20년), ** 총자산 288백만원, 자동차 2,468만원 이하('20년)

-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,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,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.

-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 5백만 원, 광역시 1억 원,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(2자녀 기준)로 지원하고,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*한다.

* (예) 3자녀 - 1억 5천 5백만 원, 4자녀 - 1억 7천 5백만 원(수도권 기준 지원한도)

-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(전세지원금의 2%)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(전세금의 98%)에 대한 금리(연 1~2%)를 부담한다.
- 한편,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.5%p(1자녀 0.2%p, 2자녀 0.3%p, 3자녀 이상 0.5%p)까지 인하하고,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.2%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, 자녀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.

④ 일반 전세임대 : 일반 10,000호, 고령자 4,000호

- 일반·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,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% 이하*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**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.

* 1인 가구 기준 132만 원, 2인 가구 219만 원, 3인 가구 281만 원('20년)

** 총자산 200백만 원, 자동차 2,468만 원 이하('20년)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(지자체 추천 필요) 등 주거 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.
-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1천만 원, 광역시 8천만 원, 지방 6천 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.
-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%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(전세금의 95%)에 대한 금리(연 1~2%)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.
-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(1순위 자격, 긴급지원대상자 한정)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%에서 2%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.
- 한편,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.2%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.

*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(1자녀 0.2%p, 2자녀 0.3%p, 3자녀 이상 0.5%p)

□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, 입주자격,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

-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(다자녀·청년,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)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(일반·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) 등에 신청하면 된다.

공공주택사업자	공고문 게재	게시(예정)일	안내 대표번호
한국토지주택공사	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	1월 21일	1600-1004
서울주택도시공사	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	3월 중	1600-3456
경기주택도시공사	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	2월 5일	1588-0466
인천도시공사	인천도시공사 누리집	2월 5일	1522-0072
부산도시공사	부산도시공사 누리집	1월 20일	051-810-1305
대구도시공사	대구도시공사 누리집	1월 말	053-350-0300

※ 세부 일정은 첨부 참조(붙임1)

□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“청년, 신혼부부, 다자녀,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”며,

- “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, 주택물색, 입주·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곽인영 사무관(☎ 044-201-44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
유형별, 사업자별 공급물량 및 모집일정

구분	공급물량 (41,000호)	모집주체		공고일	접수일	접수방식
신혼 I	9,000	LH	8,600호	1.21(목)	상시 모집	온라인접수
		SH	200호	3월 중	3월 중	SH공사 현장접수
		경기	200호	2.5(금)	2.22(월)~2.26(금)	지자체 현장접수
신혼 II	5,000	LH	4,900호	3월 중	3월 중	온라인접수
		SH	100호	3월 중	3월 중	SH공사 현장접수
청년	10,500	LH	10,500호	1.5(화)	1순위 상시 모집 * 2순위 정기모집은 미정	온라인접수
다자녀	2,500	LH	2,500호	1.21(목)	2.1(월)~2.17(수)	온라인접수
일반 고령자	14,000	LH	7,300호	-	긴급지원대상자 등 상시 모집 * 일반 정기모집은 미정	지자체 현장접수
		SH	2,500호	3월 중	3월 중	
		경기	3,200호	2.5(금)	2.22(월)~2.26(금)	
		인천	700호	2.5(금)	2.22(월)~2.26(금)	
		부산	150호	1.20(수)	1.27(수)~2.5(금)	
		대구	150호	1월 말	2월 초	

붙임 2

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별 입주자격

구분	입주자격	입주순위		자산기준(단위:만원)	
				총자산	자동차
신혼부부 I	▶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* ▶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%(맞벌이 90%) 이하 ▶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* 혼인 7년 이내 (예비)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	1순위	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중 유자녀	28,800	2,468
		2순위	신혼부부 중 무자녀		
		3순위	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		
신혼부부 II	▶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* ▶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%(맞벌이 120%) 이하 ▶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* 혼인 7년 이내 (예비)신혼부부,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	1순위	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중 유자녀	28,800	2,468
		2순위	신혼부부 중 무자녀		
		3순위	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		
청년	▶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* * 대학생, 취업준비생(졸업 후 2년 이내), 19세 ~ 39세	1순위	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·차상위계층·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	-	
		2순위	본인+부모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이하	28,800	2,468
		3순위	본인소득이 월평균소득 이하	23,700	2,468
다자녀	▶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▶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 ▶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	1순위	생계·의료·교육·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	
		2순위	월평균소득의 70%이하	28,800	2,468
일반, 고령자	▶ 무주택세대구성원	1순위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	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	
		2순위	월평균소득의 50% 이하 등	20,000	2,468

<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(단위: 원) >
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
2020년	2,645,147	4,379,809	5,626,897	6,226,342	6,938,354

※ 소득 및 자산 기준은 2020년도 기준이며, 2021년도 기준 확정 시 정정 공고 예정

